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내 석유판매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물량 한도 조정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제품 수출물량 한도 조정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수출제한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출제한 규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수출한도 조정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출제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출제한고시 제8조에 따른 수출실적에는 국내석유정보시스템(Pedsis)상 수출실적 중 로컬수출을 제외한 실적과 국제벙커링 실적을 포함한다.

제3조(수출물량 한도의 조정 사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수출제한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유종, 물량 및 수출시기 등이 확정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석유제품의 수출이 필요한 경우
2. 기상악화, 선박의 입항·출항 또는 접안 일정 변경, 항만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정된 수출시기가 변경된 경우
3. 2025년 같은 기간에 정기보수, 설비고장 등 일시적·비경상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의 수출물량을 통상적인 수출수준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원유 도입, 국내 석유제품의 생산·소비·재고 및 향후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년도 같은 기간 해당 석유제품의 수출실적이 없어 수출제한고시 제8조 본문에 따른 수출물량 한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6. 외국 정부의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공식 서한 등을 통하여 유종·물량·공급기간 등 구체적 요청사항이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수출물량 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한도 조정의 신청)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물량 한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대상 석유제품
2. 조정을 요청하는 물량 및 수출 예정시기
3. 한도 조정 신청사유
4. 제3조 각 호의 조정 사유 및 그 밖에 한도 조정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선적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
5. 제3조제4호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6. 제3조제6호의 사유인 경우, 해당 물량의 최종 도착지,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및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7. 제3조제6호의 사유인 경우, 해당 거래의 거래상대방·거래구조 및 운송경로 등이 「대외무역법」 제5조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수령에 관한 제한조치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도 조정의 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석유제품의 생산능력, 국내 공급·소비·재고, 원유 도입, 수출계획 및 향후 수급 전망과 해당 사유의 인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물량 한도의 조정 필요 여부 및 조정물량을 검토한다.

②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이 당초 예정대로 수출되

었을 경우의 수출물량이 수출제한고시 제8조 본문에 따른 한도 이내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제한고시 제8조 본문에 따른 전년도 같은 기간 수출물량에 갈음하여 해당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의 해당 석유제품에 대한 전년도 월평균 수출물량을 한도 조정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량 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조정물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한도조정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수출한도조정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기관의 임직원 및 석유 수급·국제통상·경제안보·국제관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⑦ 수출한도조정 검토위원회는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상황, 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조정물량의 적정성, 대외경제·안보상 영향 등 해당 안건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제6조(외국 정부의 공급 요청에 따른 수출 한도 조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석유협회 등 관련 협·단체를 통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공급 가능물량 및 수출 의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제한고시 제8조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한 후 실제 공급이 예정된 물량의 범위에서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외국 정부의 공급 요청에 따른 수출물량 한도 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요청국 내 공급대상자 간 직접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역상사 등 제3자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료를 통하여 해당 물량의 최종 도착지가 요청국임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거래구조 및 운송경로 등이

「대외무역법」 제5조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수령에 관한 제한조치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한도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7조(한도 조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토 결과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물량 및 기간의 범위에서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한도 조정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한 후 수출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당초 한도 조정의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호에 따라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한 경우 국내 석유제품의 공급·소비·재고, 원유 도입 및 향후 수급 전망 등 관련 여건이 변경되어 국내 공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이행 확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제한고시 제9조에 따른 수출물량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수출물량 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제4호에 따라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한 경우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제한고시 제9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국내 공급실적, 재고수준, 원유 도입 현황 등에 대한 주간 단위의 모니터링 및 확인·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수출제한고시의 적용을 받는 석유제품의 수출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다른 허가 대상에도 해당할 경우, 법률상 의제 조항이 없는 한 관련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출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과잉수출제한 완화 신청서

과잉수출제한 완화 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대표자	(인)

(단위:천BBL)

④구분	⑤항목	⑥전월 실적 (M-1)	⑦신청월 추정 실적 (M)	⑧완화월 계획 (M+1)
원유	도입량			
	정제투입량			
	가동률(%)			
해당 유종	생산량			
	내수반출량			
	(전년 동월 실적)			
	수출량			
	재고량			
기타 참고사항		(ex.전년도 동월 T/A 등 특이사항 기재)		

⑨신청일		⑩신청자		⑪연락처	

④구분-원유 : 필요시 컨덴세이트 등 원료 포함하되, 포함시 명시할 것
⑤항목-수출량 : 현재까지 각 사별 수출 관리 기준, 완화월 및 익월 계획은 완화시 계획물량 기입.
⑤항목-내수반출량 : 재정경제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준
⑤항목-재고량 : 월말 실재고량(정유공장, 직영 및 위탁저유소, 송유관 등 보유한 총 재고량)
⑦신청월은 ⑨신청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작성
※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세부기준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작성방법 준용